전기안전관리규정

2023.06.01.제정

<시설안전팀>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 제2항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활동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 및 전기로 인한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학내 전구성원과 학내 전기설비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해 적용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의 관리범위는 「전기공급약관」 제27조에 따른 수급지점을 기준으로 수용가측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전기안전관리 운영체계

제 3 조(전기안전관리업무 조직 등) 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영에 관한 책임의 소재와 지휘명령계통 및 연락계통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업무의 조직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총장은 전기안전관리의 운영을 총괄 관리한다.
2. 전기안전관리자는 법령 및 이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의 감독 직무를 적격하게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필요한 경우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학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자문, 의견, 지시에 따라야하며, 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에서 정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 4 조(점검계획 수립)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전기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상의 운전 감시업무·점검 및 행정업무에 대한 계획
2.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정검사와 자체점검을 구분한 계획
3. 부하기기의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원활한 작동을 위한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계획
4. 전체 전기설비의 안정적인 운전을 위한 감시·제어시스템의 점검계획
5. 비상시 신속한 복구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비상점검계획, 비상조치사항에 대한 계획

제 5 조 (점검계획 및 측정)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은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 항목은 별표 1의 사항을 반영하여 매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측정 시 정밀(연차)점검 항목 중 정기검사 항목과 중복되는 점검항목은 당해 연도의 경우 정기검사 합격 판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필요한 경우 정밀진단장비와 인력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 및 진단업체에 점검을 의뢰하여 정밀(연차)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제 6 조 (점검결과의 판정) 점검결과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적합 사항
   가.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위반되는 경우
2. 안전관리에 관한 조언
   가. 전기설비 설치, 운용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참고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나. 기술기준 및 KEC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다. 수목, 토목, 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가 있는 경우
   라. 운전방법이 불합리하거나 절전 등 전기사용의 합리적인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제 7 조 (점검에 관한 기록·보존)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점검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점검자
2. 점검 연월일,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
3. 점검 실시 내용(점검항목별 기준치 및 측정치,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
4. 점검의 결과
5.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를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8 조 (부적합설비 등의 조치)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검사 및 점검 결과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부적합 전기설비의 수리·개조·보수 등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전기설비의 운용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기설비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설비 중 경미한 수리(「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한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수리할 수 있다.

제9조 (계측장비 교정 등)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유지·운용 업무를 위해 계측장비의 교정주기를 참고하여 주기적으로 교정하고 또한 안전장구의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장구는 외관점검 등을 자체적으로 시험한다.

제10조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가 부재 등의 사유로 전기설비의 운전·조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지도·훈련 및 교육을 받은 자 중 1명을 지정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비상재해 발생 시를 대비하여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④ 전기안전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비상연락망을 별지 제1호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학내 게시판등을 이용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관리 교육

제11조 (안전관리교육)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전기안전과 사고예방, 사고시의 대처요령 및 전기사용 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강사를 초빙하거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교육이 수용가 또는 사업장내에서 여건상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구성원들이 보기 쉬운 학내 게시판 등에 교육 자료를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장 전기사고 예방

제12조 (안전장구의 사용)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 작업상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법, 성능 등을 숙지하고 그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험표시) ① 수변전실, 전기실, 기타 고압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등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사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기타 점검관련 세부사항 등)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점검절차, 방법, 기준 및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종전의 「전기설비안전관리규정」은 폐지한다.

[별표 1]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고시 제3조 관련)

구 분		주 기					
		월차	분기	반기	연차	공사중	감리
외관 점검 및 부하측정		○				○	○
저압 전기설비 점검							
- 절연저항 측정		-	-	△	○	-	-
- 누설전류 측정		-	△	△	-	-	-
- 접지저항 측정		-	-	○		-	-
고압 이상 전기설비 점검							
- 절연저항 측정		-	-	-	○	-	-
- 접지저항 측정		-	-	-	○	-	-
- 절연내력 측정		-	-	-	○	-	-
변압기 점검		-	-	-	-	-	-
- 절연저항		-	-	-	○	-	-
- 절연내력, 산가도 측정(절연유)		-	-	-	△	-	-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		-	-	-	○	-	-
예비 발전 설비	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	-	-	○	-	-	-
	축전지 및 충전장치 점검	-	-	○	-	-	-
	발전기 무부하 또는 부하시험	-	○	-	-	-	-
적외선 열화상 측정		-	○	-	-	-	-
전원품질분석		-	-	-	○	-	-

[비고] ○ : 필수, △ : 필요시

[별지 제1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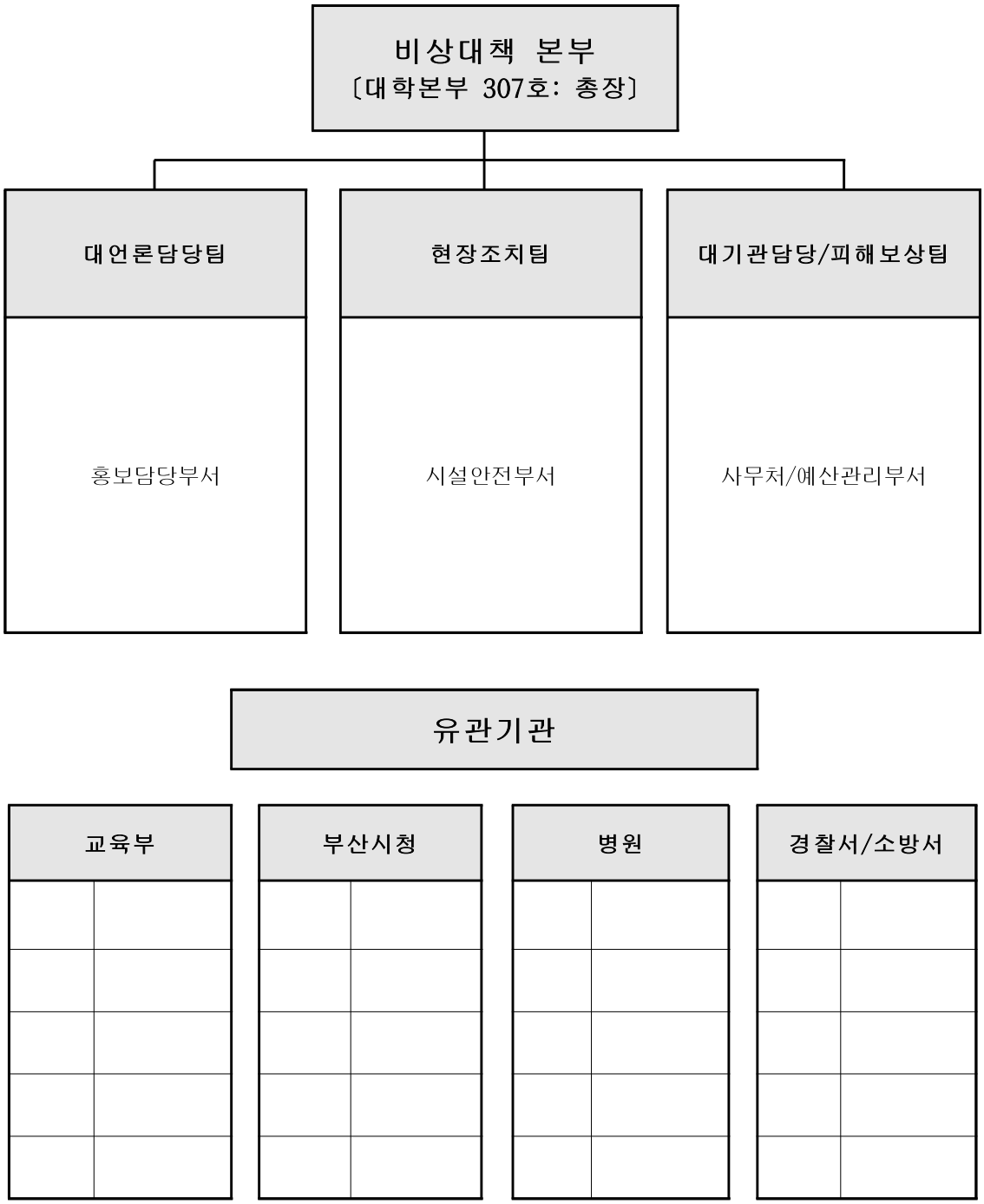
전기설비 안전관리 조직구성 및 비상연락망